■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12. 10.>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성명 (대표자)	한글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한자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그 밖의 사항
1. 상호 또는 명칭			
2.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3. 영업소 소재지			
4. 자본금			
5. 전문인력 보유 현황			
6. 사무실 보유(면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검토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 변경 기재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